학술지 연구윤리세칙

소관부서 : 정책연구부

제정 2015. 08. 17 타법개정 2020. 12. 04 개정 2022. 08. 17 개정 2024. 01. 30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부동산분석」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 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) 이 세칙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 자 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<개정 2020.12.4>
 [제목개정 2024.1.30]

제2장 연구부정행위

- 제3조(연구부정행위) 연구부정행위(이하 "부정행위"라 한다)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, 연구과제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·이중투고·중복게재, 재투고,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등을 말하며, 이하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이하 각 조에 따른다.<개정 2022.8.17>
- 제4조(위조,변조) ① "위조"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 - ② "변조"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5조(표절) "표절"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·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1.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(아이디어), 독특한 표현(단어, 어구, 절, 문장, 그래프, 도표, 사진 등), 연구 착상(가설)이나 방법(분석 체계 또는

- 논리), 이론 및 연구결과, 데이터, 조사자료 등이다.
- 2.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.
- 3.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, 데이터,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 출처표 시 또는 인용표시를 해야 한다.
- 4.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정당한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한다.
- 5.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, 아이디어, 연구 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.
- 제6조(부당한 논문저자 표시) "부당한 논문저자 표시"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6조의2(이중투고) "이중투고"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,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'게재불가'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거나 '투고철회'가 완료된 후에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<개정 2024.1.30>

[본조신설 2022.8.17]

- 제7조(중복게재) ① "중복게재"는 투고자 본인이 이미 발표(게재)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투고(게재)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1.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,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 와 유사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, 게재할 수 없다.
 - 2.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·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투고, 게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드시 그 수정·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3. 연구의 심화 및 적용 과정에서 본인의 선행 연구물을 투고할 수 있으나, 이때 활용한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출처표시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.
 - 4.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·보완하여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.

- 5.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·보완하여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다음에 예시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다만 이용된 선행 저작물의 존재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.
- 1.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을 논문형태로 투고하는 행위
- 2. 용역보고서, 정책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에 따라 작성된 저술을 별도의 논문형태로 투고하는 행위
- 3. 이미 출간된 투고자 본인의 연구보고서를 별도의 논문형태로 투고하는 경우
- 4. 워킹 페이퍼(working paper) 및 이에 준하는 연구자료를 논문으로 심화시켜 투고하는 경우
- 제8조(재투고) ① "재투고"는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②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.
 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단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항목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.
 - 1. 연구의 목적
 - 2. 연구 방법
 - 3. 연구 자료
 - 4. 연구 범위
 - 5. 연구 결과
 - 6. 논리전개방식
- 제8조의2(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) "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" 는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인 자) 또는 가족(배우자,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)(이하 "특수관계인")의 연구 참여에 관하여 「학술지 편집 및 발간세칙」 별표 8 '특수관계인 공저여부 확인서'의 내용을 부정으로 기재함으로써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(입시·진학·취업 시 활용 등)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2.8.17]

- 제9조(그 밖의 부정행위) ①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- ②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

- ③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당한 연구 행위
- 제10조(심의 및 확정) 부정행위 여부 및 경중은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고, 편집위원회(「학술지 편집 및 발간세칙」에서 정하는 편집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가 최종 확정한다.<개정 2024.1.30>

[제목개정 2024.1.30]

제3장 연구윤리조사위원회

- 제11조(구성) ① 연구윤리조사위원회(이하 조사위원회)는 조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조사위원 5인이상으로 구성한다.
 - ② 조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,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아닌 편집위원 중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4.1.30>
 - ③ 조사위원은 편집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조사위원장이 임명하며, 전체 인원의 50% 이상을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.<개정 2024.1.30>
 - ④ 당해 조사 사안과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장 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24.1.30>
 - 1.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민법상의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
 - 2.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
 - 3.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 - 4.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기피신청을 한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 - ⑤ 조사위원이 부정행위와 관계되었거나 관계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,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.
 - ⑥ 간사는 편집위원회 간사가 한다.
 - 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시작을 통보하며, 조사위 원 명단을 알려 기피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신설 2024.1.30>
- 제12조(기능)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<개정 2024.1.30>
 - 1. 삭제<2024.1.30>
 - 2.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결정에 관한 사항
 - 3.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

- 4.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- 제13조(활동기한) 조사위원회는 제23조의 편집위원회의 소집명령에 따라 구성된 때로 부터 본조사의 종결시까지 활동한다.
- 제14조(조사위원회 의결) ①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에는 조사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단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부정행위 여부 및 경중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4.1.30>
 - ② 조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- ③ 조사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조사위원장 또는 조사위원이 피조사자 및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명받아야 한다.<신설 2024.1.30>
- 제15조(조사비) 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원외 조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제보 및 권리보호

- 제16조(제보)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 린 자를 말한다.<개정 2024.1.30>
 - ② 제보자는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,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.
- 제17조(제보자의 권리보호) ① 편집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.<개정 2024.1.30>
 - ②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1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편집위원회 및 조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<개정 2024.1.30>
 -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1.30>

- ④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 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제18조(피조사자의 권리보호)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<개정 2024.1.30>
 - ② 예비조사자 및 조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1.30>
 -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.<개정 2024.1.30>
 -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·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1.30>

제5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

제19조 삭제<2022.8.17>

- 제20조(진실성 검증 원칙)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. 단, 피조사자가 예비조사자나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입증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.<개정 2024.1.30>
 -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- 제21조(진실성 검증 절차)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, 본조사,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며, 절차는 별표 1과 같다.<개정 2024.1.30>
- 제22조(예비조사)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. 예비조사 실시여부는 편집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 또는 제보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한다.<개정 2024.1.30>
 -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의 예비조사자를 지정하며, 당해 조사 사안과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예비조사자가 될

수 없다.<개정 2024.1.30>

- 1.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민법상의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
- 2.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
- 3.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- 4.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기피신청을 한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- ③ 예비조사자가 지정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시작을 통보하고, 예비조사자 명단을 알려 기피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예비조사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예비조사 착수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8.17, 2024.1.30>
- 1.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- 2. 삭제<2022.8.17>
- 3.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
- ④ 예비조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<개정 2024.1.30>
-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- 2. 예비조사결과
- 3.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
- 4.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
- 5. 조사일시, 장소, 예비조사자 명단(소속 및 전공 포함), 기타 부정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
- ⑤ 예비조사결과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의결 결과 를 5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. 다만,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<개정 2024.1.30>
- ⑥ 예비조사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의혹의 정도가 조사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.<개정 2024.1.30>
-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및 본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4.1.30>

제23조(본조사) ① 편집위원회는 제22조의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일

-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의결하고, 조사위원회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.<개정 2024.1.30>
- ② 소집된 조사위원회는 소집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를 착수하여 야 한다.<개정 2024.1.30>
- ③ 조사위원회는 본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- 1.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2.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.
- 3.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제26조의 제재조치를 편집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.
- ④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조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60일을 넘지 않는다.<개정 2024.1.30>
-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- 2. 예비조사 결과 및 조사진행경과
- 3. 관련 증거 및 증인 진술
- 4.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또는 의견진술
- 5. 조사위원회의 판단 및 결론과 각 당사자의 해당 행위에서의 역할
- 6. 연구부정행위의 경중 판단 및 제재조치 건의
- 7. 조사일시, 장소, 조사위원 명단(소속 및 전공 포함) 등
- 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본조사결 과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당사자가 이에 응하 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<개정 2024.1.30>
- 제24조(판정) ①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, 편집위원회의 확정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1.30>
 - ② 편집위원회 확정은 예비조사(제22조제6항에 따라 본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) 또는 본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,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1.30>

- 1. 부정행위 여부
- 2. 제26조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
-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. 단,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24.1.30>
- 제25조(재심의)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결정한다.<개정 2024.1.30>
 - ②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**제26조(부정행위에 대한 제재)**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.<개정 2020.12.4, 2022.8.17, 2024.1.30>
 - 1. 게재 및 심사 거부(旣(기)게재된 경우 게재된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)
 - 2.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(경중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함)
 - 3.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기 학술지에 공지
 - 4.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
 - 5. 이중투고 또는 중복게재의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 통보
 - 6.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관계기관(특수관계인이 입시·진학·취업 등 이익을 취한 학교, 연구 관련 기관 등)에 통보

부 칙<제정>

이 세칙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2.4>

이 세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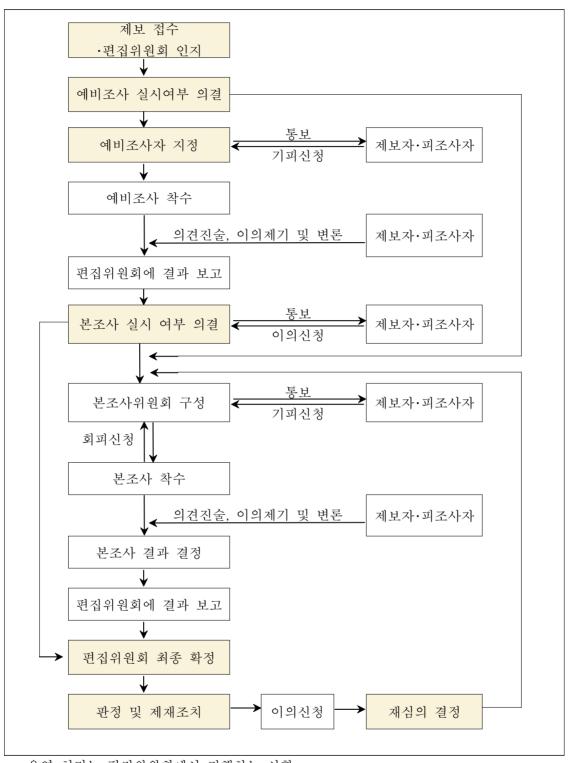
부 칙<2022.8.17>

이 세칙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4.1.30>

이 세칙은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



* 음영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항